

제 14 장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

제37조(계약기간) ① 장기요양 수급자와 시설간의 장기요양급여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. 다만, 장기요양 인정의 갱신으로 계속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가 되는 경우에는 장기요양 인정서상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.

② 등급외자와 시설간의 장기요양급여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가 정한 계약기간으로 한다.

③ 위 2항에서 정한 계약기간 중 등급외자가 장기요양 수급자로 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.

제38조(계약목적) 이용자와 시설의 권리 및 의무 등 제반 사항에 관한 내용을 계약서로 작성하여 당사자 간의 그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.

① 이용자와 시설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(이하 "계약서"로 한다)로 체결 한다. 이 경우 시설은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지체 없이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시설이 보관하여야 하며,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- 계약당사자
- 계약기간
- 장기요양급여의 종류, 내용 및 비용 등
-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

② 시설의 장은 위 ①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이용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(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)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는다.

제39조(입소보증금 등) 시설은 어떠한 명목으로든 보증금을 받지 않는다.

.

제40조(기타 비용부담액(비급여))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항(이하 "비급여대상"이라 한다)은 아래 각 호와 같으며, 이는 이용자와 그 보호자가 전액 부담한다.

① 식재료비 : 시설의 운영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, 변경 시 보호자에게 30일전에 통보한다.

구 분	1회 비용	간식비 (2회)	1일 비용	월 비용	비 고
식재료비	3,500원	1,600원	12,100원	363,000원	30일 기준

②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: 기본의 50%를 추가

③ 이 · 미용비 : 무료 제공

④ 그 외의 일상생활에 통상 필요한 것과 관련된 비용으로 수급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비용

제41조(계약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) 서비스제공자인 시설과 서비스이용자인 이용자와 그 보호자는 각각 다음의 권리 및 의무를 진다.

① 서비스제공자인 시설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.

1. 이용자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(단, 병원 입원 시는 간호,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)
2. 이용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(단,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)
3. 급여비용청구명세서 및 급여제공기록지 등을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.

② 신원인수인(보호자 또는 보증인)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.

1.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 할 수 있는 권리
2.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자의 퇴소 ·○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
3. 표준약관에 따른 이용자 면회 및 외박 ·○ 외출에 관한 권리
4. 이용자의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
5.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
6. 이용자에 대한 건강, 식사, 생활상담, 조언 및 이용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
7.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
8.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,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
9.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
10.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, 퇴소(전원)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
11. 시설의 협약 ·○ 연계 병원 외 특별한 경우 이용자에 대한 지정병원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

권리

③ 신원인수인(보호자 또는 보증인)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.

1.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·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
2.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,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
3.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
4.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
5. 이용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·○ 입퇴소 절차 ·○ 입원비용 등에 관한 책임의무
6.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·품집기 등의 오손, 파손,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

④ 이용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.

1. 이용자는 월 이용료 납부 의무
2. 시설 내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
3.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
4. 각종 프로그램 참석 의무
5.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
6. 기타 시설규칙 이행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한다.

제42조(계약의 해지)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.

1.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
2.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
3. 연속하여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
4.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이용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
5.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의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이용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
6.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, 다만, 이용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(보험료 포함) 수납 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

되소를 유보할 수 있다.

7. 이용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

제 15 장 입소보증금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

제43조(이용료 및 비용 변경)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.

1.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
2.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
3.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

②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시설(종사원을 포함한다)의 부주의 또는 실수로 인하여 계약서에 기록된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이용자나 그 보호자의 합리적인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시설은 이용자나 그 보호자의 요구에 따라 급여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. 다만,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요구사항은 급여내용의 변경사항으로 보지 아니한다.

③ 계약기간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변경 등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에 대해 변경계약서를 별도 작성한다.

제 16 장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

제44조(서비스의 내용) 시설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.

- ① 신체활동지원 서비스
- ② 일상생활지원 서비스
- ③ 정서지원 서비스
- ④ 인지활동지원 서비스
- ⑤ 여가활동지원 서비스
- ⑥ 간호 및 기능회복지원서비스
- ⑦ 지역자원연계 서비스
- ⑧ 목욕서비스
- ⑨ 송영서비스

제45조(제공 서비스에 대한 비용 부담(본인일부부담금)) ①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과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의 비급여 비용으로 한다. 다만, 수급자 중 감면 대상자 및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② 본인일부부담금 비율 (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%)

<요양보호사 2.3:1이상>

등 급	1일 급여	월 급여액	월 본인부담금
1등급	81,750원	2,452,500원	490,500원
2등급	75,840원	2,275,200원	455,040원
3등급/4등급	71,620원	2,148,600원	429,720원

<요양보호사 2.3:1미만>

등 급	1일 급여	월 급여액	월 본인부담금
1등급	78,250원	2,347,500원	469,500원
2등급	72,600원	2,178,000원	435,600원
3등급/4등급	66,950원	2,008,500원	401,700원

③ 위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제공 서비스에 대한 비용은 수급자와 그 피부양자가 전부 부담한다.

1.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규정에 따른 급여의 범위 및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서비스에 대한 비용
2. 수급자가 장기요양 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과 다르게 선택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그 차액

④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등급외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

급여비용은 일반수급자와 그 피부양자가 전액 부담한다.

- ① 제4항의 등급외자 급여비용은 시설 이용자는 3등급 수가 기준으로 정한다

제 17 장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서비스 기준과 비용

제46조(특별한 보호)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.

- ① 이용자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

1. 아래 해당하는 내용의 경우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.
 - 시설이용 어르신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
 -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,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등
2.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,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,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어르신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.
3.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,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,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,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,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 내용이다.

- ② 집중관찰 및 전문 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

1.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 전문의료서비스(산소공급, 석션 등)를 제공할 수 있다.
2.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공간으로 이동하여 편안한 환경 및 호스피스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.
3. 기타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한다.